

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(강경숙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7869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3. 30.

발 의 자 : 강경숙 · 김재원 · 신장식
서왕진 · 임호선 · 진선미
문정복 · 황운하 · 김선민
정춘생 · 이해민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청년정책의 수립 및 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청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의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비롯한,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·도지사가 구성하는 위원회에 청년위원을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장애청년 등 취약계층 청년의 참여가 미흡하여 정책의 심의·조정 및 결정과정에서 이들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되기 어렵고, 취약계층 청년의 정의에 장애인인 청년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취약계층 청년의 정의에 장애인 등 보건의료 이용에 취약한 청년을 포함하도록 하고, 청년위원을 위촉할 때 취약계층 청년이 포함되도록 노력하며,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들의 사회적 고립 예방과 생활 안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(안 제3조제5호, 제13조제6

항, 제15조제4항 및 제21조제2항 신설).

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청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5호 중 “겪는”을 “겪거나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인 청년 등 보건의료 이용에 취약한”으로 한다.

제13조제6항 중 “한다”를 “하며, 취약계층 청년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”로 한다.

제1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·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위촉직위원을 청년으로 위촉하는 경우 취약계층 청년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2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 청년의 사회적 고립 예방과 생활 안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~ 4. (생 략) 5. “취약계층 청년”이란 고용 · 교육 · 복지 등의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말한다. 6. · 7. (생 략) 제13조(청년정책조정위원회) ① ~ ⑤ (생 략) ⑥ 제4항제3호에 따른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. ⑦ ~ ⑨ (생 략) 제15조(정책결정과정에 청년의 참여 확대) ① ~ ③ (생 략) <u><신 설></u>	제3조(정의) ----- -----. 1. ~ 4. (현행과 같음) 5. ----- ----- ----- <u>겪거나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인 청년 등 보건 의료 이용에 취약한</u> ----- -----. 6. · 7. (현행과 같음) 제13조(청년정책조정위원회) ① ~ ⑤ (현행과 같음) ⑥ ----- ----- ---- <u>하며, 취약계층 청년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/u> ⑦ ~ ⑨ (현행과 같음) 제15조(정책결정과정에 청년의 참여 확대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<u>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 ·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을 청년으로 위촉하</u>

④ ~ ⑥ (생 략) 제21조(청년 복지증진) (생 략) <u><신 설></u>	<u>는 경우 취약계층 청년이 포함</u> <u>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/u> ⑤ ~ ⑦ (현행 제4항부터 제6 항까지와 같음) 제21조(청년 복지증진) 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 ② <u>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</u> <u>약계층 청년의 사회적 고립 예</u> <u>방과 생활 안정을 위한 대책을</u> <u>마련하여야 한다.</u>
---	--